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0. 31 선고 2024나102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0. 31 선고 2024나1026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1008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한솔

피고, 항소인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0. 3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10088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1)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20. 접수 제345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광국

판사이수연

판사조미화

별지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B에게'의 오키임이 명백하다.